

인증업무준칙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
Version 5.0

시행일자 : 2020. 12. 10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

문서 버전 관리

버전	날짜	책임자(관리자)	내역	변경사유
0.1	2001.3.21	James Eaton	초안	
1.0	2001.7.12	김철기 이사	제정	서비스 변경
1.5	2002.8.13	김철기 이사	개정	서비스 변경
1.6	2002.10.29	김철기 이사	개정	서비스 변경
2.0	2003.6.4	한학희 이사	개정	서비스 변경
2.1	2004.4.13	한학희 이사	개정	수수료 변경
2.5	2007.2.15	오기현 상무이사	개정	서비스 변경
3.0	2007.5.21	오기현 상무이사	개정	CPS표준 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6호)
3.1	2007.7.6	오기현 상무이사	개정	정보통신부의 변경 요청 (공문: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1413 "인증업무준칙 변경요청")
3.2	2010.6.15	김웅겸 상무이사	개정	관련기관명 변경, 가입자 의무, 주소 변경, 폐지 요건, 보증 등 변경
3.3	2011.2.28	김웅겸 상무이사	개정	배경 및 목적 변경, CA/RA/가입자 책임 및 의무사항 추가, 인증서 유효기간 명시, 재발급 수수료 명시, 환불 요건 구체화, 가입자 정보 진정성 확인 명시, 신규발급 절차 구체화, 갱신후 잔존 인증서 유효기간 안내, CRL 공고까지 걸리는 시간, OCSP/TSA 서비스 이용안내, OCSP 서비스 인증서 프로파일, CA 전자서명키배포 절차,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절차,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절차, 인증업무관련 공고 구체화, 절차적보호 조치, 인적보안, 기록보존 보완, 배상 요건 구체화, 분쟁해결/개인정보보호/감사및점검 /CPS 효력 구체화 등
4.0	2011.3.15	김웅겸 상무이사	개정	118 인증서 긴급 폐지 관련 추가
4.1	2012.8.3	강진석 상무이사	개정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개정 정기점검 보완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 등
4.2	2012.10.30	강진석 상무이사	개정	전자주소 이용목적 추가 등
4.3	2013.5.10	강진석 상무이사	개정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변경 갱신기간 : 만료1개월 → 만료2개월 주소 및 신청접수처 변경
4.4	2016.3.7	황철우 상무이사	개정	o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수준 강화 o 감사기록의 유형 변경 및 보존기간 늘림

				<p>(2년 → 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매체에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년 → 5년 미만) ○ 인증수수료(OCSP) 수수료 인하 500원 → 200원 ○ 가입자의 책임 및 의무조항 구체화 ○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변경 ○ 전자서명법의 용어로 통일 ○ 생성키 → 생성정보 / 검증키 → 검증정보
4.5	2019.2.7	장호범 본부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항목 명확하게 표시 ○ 명칭변경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외국민 등록증→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서비스URL 현실화 ○ 전자서명생성정보 만료시 파기 방법 변경 ○ 핵심/부가서비스 시스템 이름 미나열 ○ 본인확인서비스 주민번호 제공 삭제
4.6	2019.2.22	문규 본부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확인 서비스 약어 표시 변경 ○ 핵심 및 부가 서비스 목록 표시 ○ 본인확인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가능 추가
4.7	2020.9.9	김상훈 본부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관련 항목 수정 ○ CRL 발행을 최소 일1회 이상으로 수정
4.8	2020.11.20	김상훈 본부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 신청기간 한시적 수정
5.0	2020.12.10	김상훈 본부장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

목차

1.	개요	10
1.1.	배경 및 목적	10
1.1.1.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10
1.1.2.	전자서명인증체계	10
1.1.3.	TradeSign 소개	10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10
1.2.	인증업무준칙의 명칭	11
1.3.	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11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
1.3.3.	TradeSign(CA)	11
1.3.3.1.	책임과 의무	11
1.3.3.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11
1.3.3.1.2.	인증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	12
1.3.3.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12
1.3.3.1.4.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올바른 이용	12
1.3.3.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12
1.3.3.1.6.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12
1.3.4.	등록대행기관(RA)	12
1.3.4.1.	책임과 의무	13
1.3.4.1.1.	가입자 신원확인	13
1.3.4.1.2.	인증서 발급 안내	13
1.3.4.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13
1.3.5.	가입자	13
1.3.5.1.	책임과 의무	13
1.3.5.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13
1.3.5.1.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관리	13
1.3.5.1.3.	인증기관 면책	14
1.3.5.1.4.	가입자 정보 변경의 통보	14
1.3.6.	이용자	14
1.3.6.1.	책임과 의무	14
1.3.6.1.1.	인증서의 용도 내 사용	14
1.3.6.1.2.	인증서 유효성 확인	14
1.3.6.1.3.	배상 책임	15
1.3.7.	대리인	15

1.4.	인증업무준칙의 관리	15
1.5.	정의 및 약어	15
2.	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16
2.1.	인증서 종류	16
2.1.1.	범용인증서	16
2.1.1.1.	범용인증서 OID	16
2.1.2.	용도제한용 인증서	16
2.2.	인증서비스 수수료	17
2.2.1.	인증서	17
2.2.2.	인증서 조회 및 확인 수수료	17
2.2.3.	인증서 유효여부 확인 수수료	17
2.2.4.	시점확인 (TSA)	17
2.3.	환불	17
2.3.1.	환불사유	17
2.3.2.	환불수수료	17
3.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18
3.1.	인증서 발급신청	18
3.1.1.	인증서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18
3.1.2.	등록대행기관 주소 및 연락처	18
3.1.3.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 기준	18
3.1.4.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 중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사항	18
3.1.4.1.	개인	18
3.1.4.2.	법인	19
3.1.4.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19
3.1.5.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기간	19
3.2.	인증서 신규발급	19
3.2.1.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19
3.2.2.	신원확인 증표	19
3.2.2.1.	개인	19
3.2.2.2.	법인	19
3.2.2.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20
3.2.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	20
3.2.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20
3.2.5.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20
3.2.6.	가입자가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20
3.2.7.	찾아가는서비스	21
3.2.7.1.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수행방법	21
3.2.7.2.	가입자 신청서류 이송방법	21

3.2.7.3.	신원확인 담당자의 신분확인 방법	21
3.2.7.4.	신원확인 담당자의 교육 이수	21
3.2.8.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장	21
3.3.	인증서 갱신발급	21
3.3.1.	인증서 갱신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21
3.3.2.	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21
3.3.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22
3.3.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22
3.3.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22
3.3.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22
3.3.7.	가입자가 갱신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22
3.3.8.	갱신 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	22
3.4.	인증서 재발급	22
3.4.1.	인증서 재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22
3.4.2.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22
3.4.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22
3.4.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22
3.4.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23
3.4.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23
3.4.7.	가입자가 재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23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23
3.5.1.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23
3.5.2.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23
3.5.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23
3.5.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23
3.5.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23
3.5.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23
3.5.7.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23
3.6.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24
3.6.1.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24
3.6.2.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25
3.6.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25
3.6.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25
3.6.5.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 접수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까지 소요되는 최대 처리시간	25
3.6.6.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주기	25
3.6.7.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 시점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을 공고하는데 까지 소요 시간	25
3.6.8.	인증서 효력정지 상태 유지 가능 기간	26
3.7.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26
3.7.1.	이용 방법	26
3.7.2.	이용 조건	26
3.7.3.	이용계약 해지	26
3.8.	시점확인서비스(Time Stamping Service 또는 TSA 서비스 : Time Stamp Authority Service)	26
3.8.1.	이용 방법	26
3.8.2.	이용 조건	26
3.8.3.	이용계약 해지.....	26
3.9.	인증서 프로파일	27
3.9.1.	가입자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27
3.10.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프로파일	28
3.10.1.	가입자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	28
3.11.	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28
3.11.1.	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28
3.12.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정보, 검증정보) 갱신	29
3.12.1.	TradeSign이 인증기관 자신의 인증서 갱신 시 절차.....	30
3.12.2.	TradeSign이 자신의 인증서(전자서명검증정보) 배포	30
3.13.	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30
3.13.1.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유 및 절차	30
3.14.	인증업무 인정취소.....	30
3.14.1.	인증업무의 지정취소 사유.....	30
4.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30
4.1.	공고설비	30
4.1.1.	인증서,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고 설비 운영 주체 및 책임사항	30
4.2.	공고방법	31
4.2.1.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공고 주기 및 책임사항	31
5.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32
5.1.	물리적 보호조치	32
5.1.1.	인증시스템 운영실.....	32
5.1.2.	다중출입, 침입감지, 경보 및 감사, 통제	32
5.1.3.	물리적 잠금장치	32

5.1.4.	화재 및 수재, 정전방지 및 보호설비.....	32
5.1.5.	항온항습, 통풍 및 기타 보호설비.....	32
5.1.6.	시설 및 장비의 폐기처리 절차.....	33
5.1.7.	원격지 백업설비 운영.....	33
5.2.	절차적 보호조치.....	33
5.2.1.	인증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33
5.2.2.	인증업무 담당자 인증.....	33
5.2.3.	동일인에 의해 동시 수행 될 수 없는 인증업무.....	33
5.3.	기술적 보호조치.....	33
5.3.1.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33
5.3.2.	인증시스템 구성 및 관리.....	34
5.3.3.	인증S/W형상관리.....	34
5.3.4.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4
5.3.5.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호 조치.....	34
5.4.	인적보안.....	34
5.4.1.	인증업무 인력 요구사항 및 신원 절차.....	35
5.4.2.	인증업무 교육 및 업무순환.....	35
5.4.3.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	35
5.5.	감사 기록.....	35
5.5.1.	감사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35
5.5.2.	감사기록 보호조치.....	35
5.5.3.	감사기록 백업 주기 및 절차.....	36
5.6.	기록 보존.....	36
5.6.1.	보존되는 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36
5.6.2.	보존기록의 보호조치.....	36
5.6.3.	보존기록의 백업주기 및 절차.....	36
5.7.	장애 및 재해복구.....	36
5.7.1.	인증업무 장애 및 재해 유형별 신고 복구 절차.....	36
5.7.2.	인증업무 장애방지 등 연속성 보장 대책.....	36
6.	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37
6.1.	보증.....	37
6.2.	배상.....	37
6.2.1.	배상책임.....	37
6.2.2.	배상한계.....	37
6.2.3.	배상책임의 면책.....	37
6.2.4.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CRL, OCSP) 책임.....	38
6.3.	분쟁 해결.....	38
6.3.1.	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에게 전달되는 문서(또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38
6.3.2.	준칙의 해석 및 집행과 관련된 준거법	38
6.3.3.	재판 관할	38
6.3.4.	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39
6.4.	개인정보보호	39
6.4.1.	개인정보처리방침	39
6.4.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39
6.4.3.	개인정보의 제공	39
6.5.	감사 및 점검 등	40
6.5.1.	감사기록의 보관	40
6.6.	관련법의 준수	40
6.7.	인증업무준칙의 효력	40

1.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1.1. 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이하 "CPS표준"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인증센터(영문명 "TradeSign"이라 합니다.)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1.1.2. 전자서명인증체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1.1.3. TradeSign 소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전자무역인증센터는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11일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 www.tradesign.net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인증서 신청접수처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층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전화번호 : 1566-2119

1.1.4. 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인증기관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한 전자서명은 동법 제3조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전자서명법 제3조 참고)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1.2. 인증업무준칙의 명칭

이 인증업무준칙은 "TradeSign 인증업무준칙(CPS)"이라 합니다.

1.3. 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
-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

1.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9조에 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전자서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1.3.3. TradeSign(CA)

TradeSign은 인증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증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인증서비스 가입자 신원확인
- 가입자와 등록대행기관(RA)에 대한 인증서 생성, 폐지
- 등록대행기관(RA)의 지정 및 관리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의 공포

1.3.3.1. 책임과 의무

1.3.3.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다음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합니다.

- 인증기관 지정 관련 실질심사
- 인증기관용 인증서 발급(갱신 및 재발급 포함) 신청
- 인증기관용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 인증기관용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등 TradeSign은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인증기관용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가입자용 인증서를 발급함으

로써,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 TradeSign에서 발급한 인증서 내의 정보는 착오가 없다.
- 인증서의 발급과정에서 인증서 가입자로부터 TradeSign까지의 경로 상에 TradeSign의 착오로 인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1.3.3.1.2. 인증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준칙 및 관련정보를 1.1.3(TradeSign 소개)에서 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인증서 및 인증서 효력정지와 폐지에 관련된 정보를 디렉토리 또는 웹서버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입자와 이용자가 항상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3.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의거 가입자의 정보를 기밀정보로 분류하고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임의 접근 및 변경 또는 삭제를 불허합니다. 단, TradeSign은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3.3.1.4.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올바른 이용

TradeSign은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각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는 해당 분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용으로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인증서 발급에만 이용한다.
- 시점확인을 위해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시점확인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 인증서 유효성 상태정보(OCSP)검증용으로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인증서 검증에만 이용한다.

1.3.3.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등)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전자서명법에 명시된 업무의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3.3.1.6.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TradeSign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서명관련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1.3.4. 등록대행기관(RA)

TradeSign은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 TradeSign을 대신합니다.

- 인증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인증서비스 가입자 신원확인
- 인증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전산입력

1.3.4.1. 책임과 의무

1.3.4.1.1. 가입자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신원확인을 확인합니다.

1.3.4.1.2. 인증서 발급 안내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합니다.

1.3.4.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입자 정보에 대한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임의 접근 및 변경 또는 삭제를 불허합니다.

1.3.5. 가입자

이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TradeSign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TradeSign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입자를 대신하는 정보통신장비를 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5.1. 책임과 의무

1.3.5.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는 가입자의 용도에 맞게 인증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TradeSign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증서의 발급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 인증서의 폐지
- 가입자의 변경된 정보의 제공

1.3.5.1.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유출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등록대행기관 또는 TradeSign에게 통보하여 해당 인증서를 폐지 또는 효력정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합니다.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1.3.5.1.3. 인증기관 면책

가입자는 인증서 사용과 공개에 있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TradeSign의 면책을 보장합니다. 이 의무는 가입자의 인증업무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시작되며 인증서 만료(폐지 포함)후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 가입자가 그릇되게 제공한 정보
- 가입자가 태만 또는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변경된 정보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변조 등)

1.3.5.1.4. 가입자 정보 변경의 통보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 가입자의 구속, 사망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단, 구속이나 사망 등 가입자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입자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1.3.6. 이용자

TradeSign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1.3.6.1. 책임과 의무

1.3.6.1.1. 인증서의 용도 내 사용

이용자는 TradeSign의 인증서 이용목적 및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6.1.2. 인증서 유효성 확인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전자서명 생성 등)할 때에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가 이용된 시점이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인증서가 이용된 시점에 인증서가 정지 또는 폐지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1.3.6.1.3. 배상 책임

이용자는 인증서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TradeSign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TradeSign 또는 가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3.7. 대리인

대리인은 가입자가 인증서비스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하거나 허락한 자를 의미하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 인증업무준칙의 관리

TradeSign의 인증서비스에 관련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URL : <http://www.tradesign.net/cps.html>
- 전자우편 : tradesign@ktnet.co.kr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전화 : 1566-2119
- FAX : (02)6000-2086

이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권자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이며, 전자무역인증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TradeSign은 전자서명인증체계의 변경 및 서비스의 변경 등 필요 시 인증업무준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제·개정된 인증업무준칙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TradeSign은 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정의 및 약어

이 인증업무준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2.1. 인증서 종류

TradeSign은 가입자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업무(이하 "인증서비스"라 합니다)를 수행하며, 인증서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1년 이며 다만, 보안매체(금융IC카드, 보안토큰, USIM 등)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2.1.1. 범용인증서

정책이름	이용기관	용도
전자거래범용 (사업자)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전자거래범용 (개인)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개인(자연인)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전자거래범용 (서버)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서버 또는 장치의 사전 설정 에 의한 전자서명, 암호화 포함)

2.1.1.1. 범용인증서 OID

정책이름	OID(서명용)	OID(암호용)
전자거래범용 (사업자)	1 2 410 200012 1 1 3	1 2 410 200012 1 1 4
전자거래범용 (개인)	1 2 410 200012 1 1 1	1 2 410 200012 1 1 2
전자거래범용 (서버)	1 2 410 200012 1 1 5	1 2 410 200012 1 1 6

2.1.2. 용도제한용 인증서

정책이름	이용기관	용도
용도제한용 인증서	특정 전자거래기관 및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한정된 용도(업무) -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서비스 및 전

	제공하는 서비스	자세금계산서, 정부 전자민원 등
--	----------	-------------------

2.2. 인증서비스 수수료

TradeSign은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 및 부과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1. 인증서

구분	발급대상	수수료(1년)
신규발급 / 갱신발급	개인	4,000
	법인/단체/개인사업자	100,000
	서버	1,000,000
재발급	개인	무료
	법인/단체/개인사업자	10,000
	서버	무료

2.2.2. 인증서 조회 및 확인 수수료

TradeSign은 인증서를 조회, 확인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2.3. 인증서 유효여부 확인 수수료

구분	수수료(건)
실시간유효확인(OCSP)	200원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무료

2.2.4. 시점확인 (TSA)

구분	수수료(건)
TSA	500원

2.3. 환불

2.3.1. 환불사유

TradeSign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합니다.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환불을 요청 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3.2. 환불수수료

수수료	사유
-----	----

없음	가입자가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5 영업일 이내에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PG수수료 (부가세포함)	가입자가 요금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고 환불 신청한 경우 (단 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가입자가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6 영업일 이후에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단 찾아가는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환불신청을 한 경우, 위 환불수수료에 찾아가는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3.1. 인증서 발급신청

3.1.1. 인증서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인증서 신청 주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며 이 신청 주체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신원확인 증표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신청인을 확인하고 발급을 안내합니다.

3.1.2. 등록대행기관 주소 및 연락처

TradeSign 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마다 등록대행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TradeSign 웹사이트(www.tradesign.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용이 아닌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신청은 등록대행기관별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1.3.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 기준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은 신원확인과 인증서 신청서를 기준으로 승인하며,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1.4.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 중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사항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3.1.4.1. 개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3.1.4.2. 법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1.4.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표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3.1.5.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기간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인증서 신규발급

3.2.1.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증표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며 이 절차는 신청자와의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3.2.2. 신원확인 증표

신원확인 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2.2.1. 개인

구분	신원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자	신분증(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사진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및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 증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여권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	여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추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3.2.2.2. 법인

구분	신원확인 증표
법인의 대표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

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대표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p>(공동대표 법인의 경우 모든 대표의 신원확인 증표를 확인함)</p>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대리인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2.2.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구분	신원확인 증표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 -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대표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p>(대표가 2인 이상이면 모든 대표의 신원확인 증표를 확인함)</p>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 -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대리인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및 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2.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

가입자 정보는 등록대행기관으로 부터 TradeSign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전송됩니다. 이때 전달되어지는 가입자 정보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3.2.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POP(Proof Of Possession)을 통해 증명합니다.

3.2.5.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 이름을 CN(Common Name)값에 기술하며, 별도의 값을 통해 유일성을 보장합니다.

3.2.6. 가입자가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TradeSign은 가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 가능한 코드를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TradeSign에 접속하여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

로써 인증서를 수령합니다.

3.2.7. 찾아가는서비스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내방하여 신청접수 및 발급안내를 제공(찾아가는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3.2.7.1.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수행방법

3.2.1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에 따릅니다.

3.2.7.2. 가입자 신청서류 이송방법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가 가입자의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으로 이송합니다.

3.2.7.3. 신원확인 담당자의 신분확인 방법

가입자가 요구하면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는 사원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2.7.4. 신원확인 담당자의 교육 이수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찾아가는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신원확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은 신입직원 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3.2.8.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장

TradeSign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대행기관에게 가입자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및 전자서명 처리를 통해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제3자(중계서비스 기관 등)를 경유하여 가입자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

3.3. 인증서 갱신발급

3.3.1. 인증서 갱신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인증서 갱신발급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인증서 발급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단, 전자서명법 개정(2020.12.10)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인증서의 갱신 신청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대상 : 개인용 인증서
- 만료일 : 2020. 12. 10 ~ 2021. 6. 9

3.3.2. 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르며, 유효한 가입자 인

증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3.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3.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3.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3.7. 가입자가 갱신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갱신발급 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3.8. 갱신 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

갱신발급이 완료되어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되어도 기존 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증서의 폐지가 필요하다면 가입자가 직접 '3.6 인증서의 폐지'에 따라 폐지하여야 합니다.

3.4. 인증서 재발급

3.4.1. 인증서 재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인증서 재발급은 가입자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노출, 분실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는 경우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인증서 발급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3.4.2.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4.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4.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4.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4.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4.7. 가입자가 재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재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3.5.1.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은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신원확인 정보,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가입자 등록정보를 변경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인증서 발급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3.5.2.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5.7.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6.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3.6.1.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3.6.1.1.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의 정의

- 인증서 효력정지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서 효력회복은 효력정지된 인증서에 대하여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회복은 효력정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인증서 폐지는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영구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3.6.1.2.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요건

TradeSign은 다음의 경우에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의 생성정보에 대한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실종신고 또는 해산, 법인의 폐업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준칙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입자의 의무사항 준수가 천재지변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 가입자의 착오로 인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6.1.3.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의 주체 및 절차

① 가입자 신청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가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TradeSign에 제출
- 가입자가 www.tradesign.net 의 효력정지.폐지에서 기존의 유효한 인증서로 신원확인(로그인)을 하고 신청
- 가입자가 TradeSign으로 전화(1566-2119)하여 TradeSign 담당자가 요구하는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폐지

② TradeSign 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게 폐지, 효력정지 사유를 통보(email, 전화 등)하고 폐지, 효력정지 후, 인증서 폐지대장에 기재합니다.
- 가입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폐지 또는 효력정지 후, 관련 내용을 TradeSign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통합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TradeSign 가입자가 전화(118)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회신 전화번호를 남기면 TradeSign 담당 직원이 회신 번호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가 요구하는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 정보(주민번호 제외)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신청접수는 개인용 인증서에 한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서버인증서는 제외)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한 폐지신청 접수 시각은 TradeSign 담당자가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정보 및 인증서 폐지 의사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한 폐지신청 접수 이후 처리 시간은 본문 3.6.5 절에 따릅니다.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되면 해당 인증서의 폐지목록(CRL)은 TradeSign 디렉토리 시스템에 게시됩니다.
-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새로 게시된 CRL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전의 유효한 CRL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TradeSign 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6.1.4.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발행시점으로부터 공고하는 데까지 소요시간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최대 24시간 단위로 발행하며, 발행시점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6.2.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으로 신청인이 긴급하게 인증서 폐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3.6.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6.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3.6.5.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 접수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까지 소요되는 최대 처리시간

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시간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최대 60분 이내이며 인증서서비스 이용약관에 나타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시간을 변경합니다.

3.6.6.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주기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최소 일 1회 이상 발행합니다.

3.6.7.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 시점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CRL)을 공고하는데 까지 소요 시간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발행 시점부터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인증서비스 이용 약관에 나타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기간을 변경합니다.

3.6.8. 인증서 효력정지 상태 유지 가능 기간

인증서 효력정지 상태는 최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7.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3.7.1. 이용 방법

인증서의 유효 또는 폐지(효력정지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OCSP라 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TradeSign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CSP 서비스 이용자는 TradeSign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OCSP client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2. 이용 조건

OCSP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이용요금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TradeSign 과 이용자는 RFC2560 표준에 따라 요청 및 응답 전문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3.7.3. 이용계약 해지

이용자가 OCSP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한 달 전에 TradeSign 으로 통보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8. 시점확인서비스(Time Stamping Service 또는 TSA 서비스 : Time Stamp Authority Service)

3.8.1. 이용 방법

전자문서의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점확인서비스라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TradeSign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TSA 서비스 이용자는 TradeSign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TSA client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8.2. 이용 조건

TSA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이용요금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TradeSign 과 이용자는 RFC3161 표준에 따라 요청 및 응답 전문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3.8.3. 이용계약 해지

이용자가 TSA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한 달 전에 TradeSign 으로 통보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9. 인증서 프로파일

3.9.1. 가입자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가입자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은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필드명	생성	처리	내용
1	Version	m	m	V3
2	Serial Number	m	m	자동으로 할당되는 일련번호
3	Issuer	m	m	인증서 발급자의 DN
4	Validity	m	m	인증서 유효기간
5	Subject	m	m	인증서 사용자의 DN
6	Subject Public Key Info	m	m	인증서 공개정보 정보
7	Extensions	m	m	확장필드

- 확장필드

#	필드명	C	생성	처리	내용
1	Authority Key Identifier	n	m	m	발급기관 정보 식별자, 디렉토리 주소, 인증기관 인증서 시리얼 번호
2	Subject Key Identifier	n	m	m	주체정보 식별자
3	Key Usage	c	m	m	Digital Signature, non-Repudiation
4	Certificate Policy	c	m	m	인증서 정책, CPS 주소, 인증서 표시규격
5	Policy Mappings	-	-	-	사용안함
6	Subject Alternative Names	n	m	m	가입자 한글실명과 VID
7	Issuer Alternative Names	n	o	m	사용안함
8	Extended Key Usage	n	o	o	보안토큰 사용 시 사용
9	Basic Constraints	-	x	x	사용안함
10	Policy Constraints	-	-	-	사용안함
11	Name Constraints	-	-	-	사용안함
12	CRL Distribution Point	n	m	m	CRL 획득 정보
13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n	m	m	OCSP 서버 접근 정보

3.10.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프로파일

3.10.1. 가입자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

가입자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은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필드명	생성	처리	내용
1	Version	m	m	V2
2	Signature	m	m	서명 알고리즘
3	Issuer	m	m	발급자의 DN
4	This Update	m	m	개시날짜
5	Next Update	m	m	다음 업데이트
6	Revoked Certificates	m	m	폐지된 인증서 리스트
7	CRL Extensions	m	m	확장필드

- CRL 확장필드

#	필드명	C	생성	처리	내용
1	Authority Key Identifier	n	m	m	기관 키 식별자, 발급자 정보
2	Issuer Alternative Names	n	o	m	사용안함
3	CRL Number	n	m	m	CRL 번호
4	Issuing Distribution Point	c	m	m	디렉토리 주소

- CRL 엔트리 확장필드

#	필드명	C	생성	처리	내용
1	Reason Code	n	m	m	원인코드
2	Hold Instruction Code	n	o	m	사용안함
3	Invalidity Date	n	o	m	폐지날짜
4	Certificate Issuer	c	o	m	사용안함

3.11. 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3.11.1. 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OCSP서비스용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은 “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필드명	생성	처리	내용
1	Version	m	m	V3
2	Serial Number	m	m	자동으로 할당되는 일련번호
3	Issuer	m	m	인증서 발급자의 DN
4	Validity	m	m	인증서 유효기간
5	Subject	m	m	인증서 사용자의 DN
6	Subject Public Key Info	m	m	인증서 공개정보 정보
7	Extensions	m	m	확장필드

- 확장필드

#	필드명	C	생성	처리	내용
1	Authority Key Identifier	n	m	m	발급기관 정보 식별자, 디렉토리 주소, 인증기관 인증서 시리얼 번호
2	Subject Key Identifier	n	m	m	사용자의 공개키 hash 값
3	Key Usage	c	m	m	Digital Signature, non-Repudiation
4	Certificate Policy	b	m	m	인증서 정책, CPS 주소, 인증서 표시규격
5	Policy Mappings	-	-	-	사용안함
6	Subject Alternative Names	n	m	m	가입자 한글실명과 VID
7	Issuer Alternative Names	n	o	m	사용안함
8	Extended Key Usage	N	o	o	사용안함
9	Basic Constraints	-	x	x	사용안함
10	Policy Constraints	-	-	-	사용안함
11	Name Constraints	-	-	-	사용안함
12	CRL Distribution Point	N	m	m	CRL 획득 정보
13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N	m	m	http://ocsp.tradesign.net:80/OCSPServer
14	OCSP No Check	n	o	m	id-pkix-ocsp-nocheck

3.12.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정보, 검증정보) 갱신

3.12.1. TradeSign이 인증기관 자신의 인증서 갱신 시 절차

TradeSign은 인증기관 자신의 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전자서명인증체계의 변경에 의해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절차는 “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5.2(인증기관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설비)”를 준수합니다.

3.12.2. TradeSign이 자신의 인증서(전자서명검증정보) 배포

TradeSign은 갱신된 인증서(전자서명검증정보)를 디렉토리 서버에 게시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신규,재발급,갱신)할 때에 가입자SW를 통해 갱신된 인증서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13. 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3.13.1.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유 및 절차

TradeSign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② TradeSign 은 휴지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폐지 종료일을 정합니다.
- ② 전자서명법 제5조에 따라 휴지는 시작일 30일 전, 폐지는 종료일 60일 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3.14. 인증업무 인정취소

TradeSign 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취소)에 따라 인정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거나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4.1. 인증업무의 지정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법 제17조제1호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4.1. 공고설비

4.1.1. 인증서,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고 설비 운영 주체 및 책임사항

TradeSign은 인증서,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4.2. 공고방법

4.2.1. 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공고 주기 및 책임사항

TradeSign은 인증업무관련정보를 본 인증업무준칙 4.1(공고설비)의 정보저장위치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인증업무관련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인증업무준칙 3.6.3(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발행주기 및 공고)에 따라 해당 사안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TradeSign의 인증서비스에 관련한 정보의 저장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radeSign 인증업무준칙 : <https://www.tradesign.net/cps.html>
- TradeSign 유효성확인 서비스(OCSP) : <http://ocsp.tradesign.net:18000/OCSPServer>
- 가입자 인증서와 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 : <ldap://ldap.tradesign.net:389>
- 최상위 인증기관인증서 :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3_01List.jsp
- 인증기관의 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 :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3_02.jsp

5.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5.1. 물리적 보호조치

TradeSign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인증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합니다.

5.1.1. 인증시스템 운영실

핵심인증시스템(키 생성 시스템, 인증서 생성·관리시스템, 디렉토리 시스템, 인증서 상태 확인 시스템 및 시점확인 시스템 등)은 별도의 구획된 통제구역 내 설치, 운영합니다.

5.1.2. 다중출입, 침입감지, 경보 및 감사, 통제

① 출입통제 시스템은 신원확인카드, 지문인식 및 무게감지 장치 등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통제구역 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 기능을 갖는 감시 통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합니다.

-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 침입감지시스템

②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이 핵심인증시스템실 등에 출입할 경우에 반드시 담당 관리자가 동행합니다.

5.1.3. 물리적 잠금장치

핵심인증시스템은 물리적 접근통제를 위해 보안캐비닛 내에 설치 운영하며, 보안캐비닛 키는 별도의 열쇠보관함에 보관합니다.

5.1.4. 화재 및 수재, 정전방지 및 보호설비

① TradeSign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② TradeSign은 침수에 대비하여 인증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합니다.

③ TradeSign은 화재에 대하여 인증관련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할 때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성분의 휴대용 소화기 및 자동 소화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④ TradeSign은 제한된 장소의 내화금고에 주요 저장기록매체를 저장하여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합니다.

5.1.5. 항온항습, 통풍 및 기타 보호설비

Tradesign내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설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5.1.6. 시설 및 장비의 폐기처리 절차

TradeSign은 시설 및 장비, 문서, 데이터를 폐기하는 경우 보안 관리자가 입회하에 물리적, 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파기합니다.

5.1.7. 원격지 백업설비 운영

TradeSign은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대비하여 10km이상 격리된 원격지 백업설비를 설치, 운영하며, 물리적으로 접근통제장치와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캐비닛에 보관합니다.

5.2. 절차적 보호조치

5.2.1. 인증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자 업무를 지정하고 구분하며 업무분장표에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모든 보호조치를 계획, 감독, 통제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 모든 보호조치의 실행을 담당하는 보안관리자를 지정
- 주요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관리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을 1인 이상 확보하여 보안실무자로 지정

5.2.2. 인증업무 담당자 인증

물리적 인증방법은 다중결합(신원확인카드, 지문인식, 무게감지)통제 구역을 통과해야 하고, 업무에 맞게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있는 자만 허용하고, 시스템 인증방법은 방화벽 시스템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OTP(One Time Password)로 승인된 담당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5.2.3. 동일인에 의해 동시 수행 될 수 없는 인증업무

인증업무 운영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감안하여 키 생성 업무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외 인증업무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2인 이상이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5.3. 기술적 보호조치

5.3.1.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① 전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정보, 검증정보) 생성

TradeSign은 인가된 인원만이 내부 및 외부 물리적 침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키생성 시스템에서 전자서명키를 생성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TradeSign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봉인, 접근권한 확인 및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변경 방지

기능을 갖춘 저장장치에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③ 전자서명생성정보 파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전자서명 생성정보 저장매체를 해당 저장장치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고,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훼손·유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 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④ 전자서명생성정보 사용기간

TradeSign 및 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해당 인증서가 유효한 동안만 사용합니다.

5.3.2. 인증시스템 구성 및 관리

TradeSign은 핵심인증시스템 및 인증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서비스관리시스템(SMS)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을 시행하며 시스템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인증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 생성 시스템
- 인증서 생성·관리시스템
- 디렉토리 시스템
- 인증서 상태 확인 시스템
- 인증서 등록 시스템

5.3.3. 인증S/W형상관리

서비스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추가/변경/삭제 시 사항을 기록하여 버전별 형상을 관리합니다.

5.3.4.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회선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며, 네트워크시스템의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5.3.5.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호 조치

TradeSign은 부가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서비스관리시스템(SMS)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을 시행하며 시스템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시점확인 시스템
- 웹서비스 시스템

5.4. 인적보안

5.4.1. 인증업무 인력 요구사항 및 신원 절차

인증 업무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으로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 2조(지정기준)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12인 이상 확보합니다.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5.4.2. 인증업무 교육 및 업무순환

- ①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년 1회 이상 정보보호관련 내부 또는 외부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②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의 준수에 관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며, 직원의 업무변경이나 인사 이동, 퇴직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계정 삭제 및 출입카드를 반납합니다.

5.4.3.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

비인가자가 인증 및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전자서명법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 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에 따릅니다.

5.5. 감사 기록

5.5.1. 감사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TradeSign은 핵심인증시스템과 기타인증업무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 사건 등의 세부내역을 감사 기록에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가입자 등록 정보를 입력·접근·변경·삭제
- 전자서명정보를 생성·접근·파기
- 인증서를 생성·발급·갱신·효력정지·폐지
- 가입자 인증서의 등록 및 관리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핵심인증시스템의 시작과 종료
- 계정의 추가 및 삭제
- 사용자 권한 변경
- 로그인(login) 및 로그오프(logoff)
- 기타 핵심인증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활동

5.5.2. 감사기록 보호조치

감사 관리자 외 시스템의 각 업무 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5.3. 감사기록 백업 주기 및 절차

관리책임자는 인증시스템의 감사기록을 매월 1회 이상 위·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제외한 백업매체에 백업하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5.6. 기록 보존

5.6.1. 보존되는 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록합니다.

- 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 증명서 등의 사본
- 인증서와 인증서 효력 정지 및 폐지목록(CRL)
- 인증서 폐지에 관한 정보
-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정보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생성에 관한 기록과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수령서
-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5.6.2. 보존기록의 보호조치

보존기록은 물리적, 인적통제를 통한 인가된 관리자만이 접근가능하며, 시건장치가 구비된 캐비닛에 보관하여 보존기록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도록 보호합니다.

5.6.3. 보존기록의 백업주기 및 절차

보존기록은 일/주/월 단위로 백업하여 보존하고, 월 백업본은 보존기록의 손실 및 파기에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설비에 각1부씩 소산하여 보관합니다.

5.7. 장애 및 재해복구

5.7.1. 인증업무 장애 및 재해 유형별 신고 복구 절차

인증업무 장애 및 재해 시 “인증업무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신고 및 복구절차에 따라 복구합니다.

5.7.2. 인증업무 장애방지 등 연속성 보장 대책

- ① 핵심인증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하여 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 ② 네트워크 회선은 서로 다른 ISP로부터 제공되도록 이중화하여 구성하며, 하나의 네트워크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회선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구성합니다.

6. 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6.1. 보증

TradeSign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증합니다.

- 발급된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이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즉, 가입자의 신용 및 가입자 관련 정보의 불변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2. 배상

6.2.1. 배상책임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 20 조(배상책임)에 의거 TradeSign이 제공한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TradeSign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6.2.2. 배상한계

TradeSign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간배상총액(10억원) 내에서 배상하며, 건당 최고배상액(10억원) 내에서 배상합니다.

보험계약 상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초과분에 대해 배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6.2.3. 배상책임의 면책

- ① TradeSign의 인증서 정책(용도, 발급대상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② TradeSign의 인증서 서비스 "발급(신규, 재발급, 변경, 갱신) 및 인증서 효력정지, 폐지 목록의 공고 등" 제공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③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TradeSign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④ 이용자 및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⑤ TradeSign이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 ⑥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

로 발생한 손해

- ⑦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⑧ 전자우편용,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6.2.4.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CRL, OCSP) 책임

- ① TradeSign 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CRL의 다음공고시각(Next Update) 이내에 CRL을 업데이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 폐지 또는 효력정지 사실이 CRL에서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 가입자의 인증서 폐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OCSP)'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 ② TradeSign 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 다음의 책임이 없습니다.
 - 최신 CRL이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이용자가 기존 CRL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인증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폐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시각과 CRL의 다음공고시각(Next Update)까지의 시간차에 의한 가입자, 이용자의 손해 (인증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
- ③ TradeSign은 신뢰성 있는 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CRL 보다는 OCSP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6.3. 분쟁 해결

6.3.1. 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에게 전달되는 문서(또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 ① 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포함하며, 전자서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전자서명과 관련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② 전자서명에 사용된 인증서가 서명 당시에 유효한 상태이며 정지 또는 폐지 상태가 아니어야 함

6.3.2. 준칙의 해석 및 집행과 관련된 준거법

본 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6.3.3. 재판 관할

TradeSign과 인증관련 당사자간의 인증업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 소송관할은 민사소송

법의 관할규정을 따릅니다.

6.3.4. 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TradeSign은 가입자 및 이용자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분쟁해결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쟁 발의 또는 관련 당사자는 TradeSign에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동 문서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관련법 위반행위 및 인증업무준칙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가 TradeSign 인 경우에는 TradeSign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6.4. 개인정보보호

6.4.1. 개인정보처리방침

TradeSign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며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링크 : <http://www.tradesign.net/service/policy/privacy>

6.4.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TradeSign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합니다.

- ① 인증서의 발급 등의 서비스 및 요금결제
- ②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 ③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식별, 비인가 사용방지, 갱신안내 등의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 ④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6.4.3. 개인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 외의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ISP에 개인정보 제공' 등 가입자가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TradeSign은 및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가입자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가입자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가입자 동의에 따라 파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5. 감사 및 점검 등

6.5.1. 감사기록의 보관

Tradesign은 인증시스템 관련 감사기록을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한 저장매체로 백업합니다.

6.6. 관련법의 준수

본 준칙의 해석과 적용은 TradeSign은 아래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TradeSign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관련자들은 전자서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7. 인증업무준칙의 효력

- ① 본 인증업무준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본 인증업무준칙은 새롭게 개정된 준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효력이 종료됩니다.